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8일, 이종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종배의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등 전원설비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기본계획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환경적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라는 계획 본연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축 전망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이미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무적 운영 사항의 명문화 여부를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